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구청 제2021-건축과-52545호(2021.09.01)

건축허가번호 : 2021-건축과-신축허가-11 (2021.02.05.)

사업관계자 명칭 [시행령 제8조①항6호, 8호]

구분	분양사업자(시행수탁사)	신탁업자 겸 공급금액관리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한국자산신탁(주)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리치클립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7459765	110111-2137895	110111-7678315

생활숙박시설 관련

- ■ 본 건축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닙니다.
- ■ 지금 분양 모집중인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생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전화번호 : 051-605-4405,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진설계사항

■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설계 적용	■ 내진능력	최대지반가속도(g) = 0.204(g), MMI등급 : Ⅶ등급

분양사업자와 신탁사와의 관계 [시행령 제8조 ①항 7호]

한국자산신탁(주)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서 시행위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로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금액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8번지 [시행령 제8조①항2호]
2. 대지면적 : 2,074.3000㎡ (생활숙박시설 부분 지분 : 1,805.9560㎡)
3. 연 면 적 : 33,716.8100㎡ (생활숙박시설 부분 연면적 : 29,355.0000㎡) (지상층 및 지하층 포함) [시행령 제8조①항3호]
4.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방화지구 [시행령 제8조①항5-3호(가)]
5. 목적물인도 예정일 : 2025년 1월 [시행령 제8조①항10호] (사용승인 이후, 단 목적물인도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6.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6층~지하1층 : 주차장, 기계실, 저수조, 오배수펌프실, 빗물저류조, 전기/발전기실, 가압펌프실, BOH, 재활용품보관소 등 [지하 1층 :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골프클럽)]
   - 지상1층~지상3층 : 근린생활시설, 방재센터, 로비 등
   - 지상4층~지상29층 : 생활숙박시설 [지상29층 :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피트니스클럽, GX클럽, 라운지)]
7. 분양대상물건
   - 생활숙박시설 : 지상4층~지상29층 (26개층), 1개동 408실, 연면적 29,355.0000㎡
8.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급대상

(단위 : ㎡)

군	타입	공급실수	실별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1군	20A	5	20.8800	9.4930	30.3730	0.5790	10.5758	41.5278	2.5549
	20B	21	20.9800	9.5386	30.5186	0.5816	10.6264	41.7266	2.5669
	25	26	25.3600	11.5300	36.8900	0.7031	12.8449	50.4380	3.1030
	27	24	27.6800	12.5846	40.2646	0.7675	14.0201	55.0522	3.3868
2군	33A-1	78	33.2700	15.1262	48.3962	0.9224	16.8513	66.1699	4.0709
	33A-2	26	33.2700	15.1262	48.3962	0.9224	16.8513	66.1699	4.0709
	33B	26	33.9300	15.4263	49.3563	0.9407	17.1856	67.4826	4.1516
	34	25	34.8100	15.8263	50.6363	0.9651	17.6314	69.2328	4.2593
	40	126	40.8700	18.5815	59.4515	1.1332	20.7009	81.2856	5.0008
	42	25	42.3600	19.2589	61.6189	1.1745	21.4556	84.2490	5.1831
3군	56	26	56.5300	25.7014	82.2314	1.5673	28.6326	112.4313	6.9169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금액 : 원, VAT포함)

군	타입	층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50%)					잔금 4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금액	계약시	2022.04.05	2022.10.05	2023.04.05	2023.10.05	2024.04.05	목적물인도일
1군	20A	4~8층	최저가	93,503,000	124,370,000	12,437,000	230,310,000	23,031,000	23,031,000	23,031,000	23,031,000	23,031,000	23,031,000	92,124,000
			최고가	94,518,000	125,720,000	12,572,000	232,810,000	23,281,000	23,281,000	23,281,000	23,281,000	23,281,000	23,281,000	93,124,000
	20B	9~29층	최저가	94,978,000	126,320,000	12,632,000	233,930,000	23,393,000	23,393,000	23,393,000	23,393,000	23,393,000	23,393,000	93,572,000
			최고가	99,850,000	132,800,000	13,280,000	245,930,000	24,593,000	24,593,000	24,593,000	24,593,000	24,593,000	24,593,000	98,372,000
	25	4~29층	최저가	113,813,000	151,370,000	15,137,000	280,320,000	28,032,000	28,032,000	28,032,000	28,032,000	28,032,000	28,032,000	112,128,000
			최고가	119,700,000	159,200,000	15,920,000	294,820,000	29,482,000	29,482,000	29,482,000	29,482,000	29,482,000	29,482,000	117,928,000
	27	5~28층	최저가	124,069,000	165,010,000	16,501,000	305,580,000	30,558,000	30,558,000	30,558,000	30,558,000	30,558,000	30,558,000	122,232,000
			최고가	127,317,000	169,330,000	16,933,000	313,580,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31,358,000	125,432,000
2군	33A-1	4~29층	최저가	155,039,000	206,210,000	20,621,000	381,870,000	38,187,000	38,187,000	38,187,000	38,187,000	38,187,000	38,187,000	152,748,000
			최고가	168,720,000	224,400,000	22,440,000	415,560,000	41,556,000	41,556,000	41,556,000	41,556,000	41,556,000	41,556,000	166,224,000
	33A-2	4~29층	최저가	158,085,000	210,250,000	21,025,000	389,360,000	38,936,000	38,936,000	38,936,000	38,936,000	38,936,000	38,936,000	155,744,000
			최고가	172,055,000	228,850,000	22,885,000	423,790,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42,379,000	169,516,000
	33B	4~29층	최저가	151,642,000	201,680,000	20,168,000	373,490,000	37,349,000	37,349,000	37,349,000	37,349,000	37,349,000	37,349,000	149,396,000
			최고가	160,777,000	213,830,000	21,383,000	395,990,000	39,599,000	39,599,000	39,599,000	39,599,000	39,599,000	39,599,000	158,396,000
	34	4~28층	최저가	155,612,000	206,980,000	20,698,000	383,290,000	38,329,000	38,329,000	38,329,000	38,329,000	38,329,000	38,329,000	153,316,000
			최고가	162,311,000	215,890,000	21,589,000	399,790,000	39,979,000	39,979,000	39,979,000	39,979,000	39,979,000	39,979,000	159,916,000
	40	4~29층	최저가	186,760,000	248,400,000	24,840,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84,000,000
			최고가	195,895,000	260,550,000	26,055,000	482,50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193,000,000
	42	4~28층	최저가	183,079,000	243,510,000	24,351,000	450,940,000	45,094,000	45,094,000	45,094,000	45,094,000	45,094,000	45,094,000	180,376,000
			최고가	189,778,000	252,420,000	25,242,000	467,440,000	46,744,000	46,744,000	46,744,000	46,744,000	46,744,000	46,744,000	186,976,000
3군	56	4~29층	최저가	262,532,000	349,180,000	34,918,000	646,630,000	64,663,000	64,663,000	64,663,000	64,663,000	64,663,000	64,663,000	258,652,000
			최고가	286,760,000	381,400,000	38,140,000	706,300,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282,520,000

[면적관련 사항]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함.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
-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용도인 공용면적등은 상기 생활숙박시설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임.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로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재활용품보관소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특정용도가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고, 각 호실별로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은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계산 상 단수 정리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생활숙박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지분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 및 대지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 공용부분은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공급금액 및 일정 관련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실별, 층별, 향별, 조망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최저가와 최고가로 나누어 표기했으며, 호실별 공급금액은 공급안내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 인지세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까지 납입시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음.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해야함.
- 계약금은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고 계약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람.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금액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
-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음)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조건은 공급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요망).
- 잔금의 선납할인에 대하여는 목적물인도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목적물인도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목적물인도기간 종료일까지(목적물인도 예정일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실목적물인도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목적물인도(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 및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이 광고문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상기 공급금액과 별도로 계약자는 유상옵션을 선택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며, 유상옵션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임.
- 상기 호수는 사업관계자에서 임의 부여한 호수로서 향후 건축물대장에 등재 시 변경될 수 있음.

청약신청자격

- 분양광고일(2021.09.02)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하며, 호수추첨을 통해 결정함.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군" 별 1건씩, 총3건까지 청약신청 가능함.(동일인이 동일군에 2개 이상 또는 총 4건이상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청약신청 과 당첨 전부를 무효 처리함)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한 청약시 정상 진행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가능 건수를 초과할 시 청약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함)
- 청약신청은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견본전시관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함.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수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가 임의로 호실을 통합 또는 개별 분리하여 분양할 수 있음.

청약신청 방식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홈페이지 접속 (http://sm-prugiocity.co.kr) ▶ 홈페이지내 청약신청 배너클릭 ▶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군의 청약신청 탭 클릭 ▶ 청약 신청 ▶ 가상계좌 발급 ▶ 청약금 입금 (지정된 가상계좌) ▶ 청약완료

※ 세부적인 청약신청 방식은 견본전시관에 구비된 별도의 청약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 :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아래 서류 구비 후 견본전시관 방문하여 청약신청.
※ 신청 시간 : 2021년 9월 7일 ~ 9월 8일 (10:00~17:00) 마감.
※ 본인인증절차를 위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여야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음.
※ 신청마감 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입금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상기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공급일정	내용
청약신청일	2021. 09. 07 ~ 2021. 09. 08 (2일간) (10:00~17:00)	-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공식 홈페이지 청약사이트의 청약센터 접속 (http://sm-prugiocity.co.kr) - 법인은 견본전시관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함
당첨자 발표	2021.09.10. (11:00)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공식 홈페이지 내 게시
계약일자	2021. 09. 13 ~ 2021. 09. 14 (2일간) (10:00~16:00)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견본전시관 진행
견본전시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78-2 (센텀고등학교 맞은편)	
당첨자 선정 및 호수결정방법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공식홈페이지 청약 및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당첨자 호수결정	
유의사항	- 해당 일시에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공식 홈페이지 청약 및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당첨자 및 호수가 결정됩니다.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호수배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불가) -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되지 않으며, 잔여물량 및 부적격 당첨자의 호실은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은행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1군	100만원	국민은행	청약 시 부여된 가상계좌	한국자산신탁㈜
2군	100만원			
3군	100만원			

- 청약신청금은 청약신청과정에서 반드시 지정된 가상계좌(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견본전시관 현금 수납은 불가함. (무통장 입금 외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무효로 간주하여 미입금된 것으로 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손실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
- 법인은 견본전시관에 방문하여 청약시 구비서류 제출 및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야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함. 법인의 현장청약 접수 건은 청약마감 후 일괄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등록됨.
- 청약신청 시 청약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신청건별로 계좌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청약 신청시 발급된 가상계좌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청약신청금의 입금자명과 청약신청자명, 환불계좌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종료일 17:00까지만 청약신청금 납부가 가능함.
- 청약신청금 계좌는 공급금액 납부 계좌와 다름.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환불개시일	환불방법
2021년 10월 8일(금) 14:00이후	청약시 제출한 청약신청자 명의 금융계좌로 영업일기준 1개월 이후 순차적 환불예정

-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휴대폰 번호 계좌 및 개인사업자의 계좌 불가함)로만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 및 청약금 환불계좌 예금주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
-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약 시 기재한 환불계좌 오류, 환불 불가계좌 및 기타사항으로 환불이 지연 혹은 불가한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환불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은 당첨과 무관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청약 시 구비서류 (법인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법인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전시관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동일인의 청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함.
※ 법인 :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상기서류 구비 후 견본전시관을 방문하여 청약신청

• 청약신청 시 공통 유의 사항

- 본 청약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함.(법인은 견본전시관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공급시설은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된 호실만 계약이 가능함.
- 청약신청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자 확인은 견본전시관 또는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홈페이지 접속 (http://sm-prugiocity.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함.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의 경우 위탁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음.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2021년 9월 13일(월) ~ 9월 14일(화) (2일간) 10:00~16:00
- 계약장소 :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견본전시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78-2)
  ※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 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계약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음.

생활숙박시설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공급금액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은행	067537-04-026243	한국자산신탁㈜
중도금/잔금	국민은행	호실별 가상계좌	한국자산신탁㈜

- 공급금액의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계좌로 납입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제정, 시행으로 최초 공급 계약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함.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임.
- 모든 공급금액은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며, 견본전시관 현금 수납은 불가하고 납부일과 금액 등은 공급자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무통장 입금 외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무효로 간주하여 미입금된 것으로 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손실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
-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함.
- 공급금액의 입금시 계약자의 성명,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1) 홍길동이 401호 계약시 : 401홍길동
- 낙찰 또는 당첨된 타입 및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청약신청금은 환불되며,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함.
  (추후 당첨자는 지나간 당첨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공급 호수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될 예정이므로, 호수별로 계좌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람.
-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공급금액을 관리함.
- 매수인의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금액 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 체결 시	•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해당사항 없음) • 인감증명서 3부(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불가) 3부 (용도 :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용 / 위수탁계약체결용 / 설계변경동의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3부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3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3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부)
법인 계약 체결 시	• 청약신청 접수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3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3부) (용도 :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용 / 위수탁계약체결용 / 설계변경동의용)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부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 및 설계변경동의용 / 위수탁계약체결용)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가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부 (위임장 양식은 당사 견본전시관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추후 생활숙박시설의 영업신고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건수 수량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는 본 광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공급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 및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처리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인도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목적물인도시기는 단지내 타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점 시기와 다를 수 있음.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초 분양공급(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시군구청에 거래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의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공급계약서와 최종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 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본 생활숙박시설은 주식회사 온다 또는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가 지정하는 1인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운영 관련 위수탁계약을 공급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조건에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품임. 본 항에 따른 조건은 본 생활숙박시설의 준공 이후, 수분양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또는 본 공급계약서에 따른 수분양자(본 생활숙박시설의 준공 이후 수분양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 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시행위탁자가 제안하는 본 생활숙박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함.
- 당첨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관리비 납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 조건을 따르기로 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함.
- 현장여건 및 기능 ·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견본전시관 및 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음.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총 공급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함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함.(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 1~5차(공급금액의 50%)에 대한 대출이자는 개별대출약정 및 공급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대출금액 및 대출이율 등)은 추후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대출 조건은 계약자 중 금융기관 대출자격이 되는 분에 한하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본 상품 중도금 대출시 제2금융권을 통해 조달 및 알선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목적물인도기간 내 목적물인수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목적물인도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목적물인도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인수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목적물인도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목적물인도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목적물인도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목적물인도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공급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목적물미인수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사무소 및 견본전시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다실계약자, 법인 및 외국인의 경우 당사가 지원하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불가할수 있으며, 대출이 불가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수분양자의 금융신용 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공급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목적물인도 예정일 : 2025년 1월(정확한 목적물인도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실사용일이 사용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사용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사용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사용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용 시기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장애인 호실 관련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4~8층의 1호라인 5실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용된 호실이며, 부대시설의 장애자 램프 위치, 길이, 점자 블록 위치, 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10조 ②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계약금 10% 완납한 후 전매가 가능함.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며,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분양권 전매 시 지정된 일자에 전매진행이 가능하며, 공급금액 미납, 연체료 미납, 대출 미승계 시에는 전매가 불가함.
-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고, 설령 사업주체가 권리의무 승계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 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과 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소송제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임.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한(할) 모든 민, 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임(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생활숙박시설 유의사항

- 본 건축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님.
- 지금 분양 모집 중인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되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음. 숙박업(생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임.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전화번호 : 051-605-4405,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부담임.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업태 : 부동산업 및 임대업, 또는 부동산업 / 종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함.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 및 위탁자, 시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공급금액 납부분 부터는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단, 수분양자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용면적 산정 시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산정되어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실사용 면적상 차이가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비주택 상품이므로 현재 기준 전세자금보증이 불가하여, 향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고, 준공 후 위 표시재산에 대한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향후 대상물의 성질에 대한 무지를 사업관계자(시행수탁자, 시행위탁사, 시공사 등)에 주장할 수 없음.
- 목적물인도일 이후 이를 정해진 용도(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형 · 개조 · 증개축하는 행위는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생활숙박시설 내에 제공되는 발코니는 냉난방, 환기 및 위생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구역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의거하여 확장사용이 불가함.
- 외국인이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 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온다가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위수탁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생활숙박시설은 수분양자와의 위수탁계약체결을 주식회사 온다 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1인이 위탁관리하며, 숙박업 신고는 주식회사 온다 또는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자 신고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건축물의 수분양자 또는 본 건물의 소유자 등의 동의 및 별도 시설물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는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본 건물의 준공 이후,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본 건축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관계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회사가 본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관리단 총회 의결권 중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 또는 숙박계약자가 보유한 의결권은 상기 생활숙박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관계자(시행수탁자, 시행위탁사, 시공사등)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 생활숙박시설의 영업개시를 위한 호실별 인테리어 진행가능하며, 구조안전 및 생활과 관련된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의 인테리어에 대하여 계약자는 동의하기로 함.
- 주식회사 온다는 확정수익을 확약하지 않으며, 다양한 외부환경적 요인에 따라 매월 수익이 변동될수 있음. 다만, 주식회사 온다는 수분양자를 대신하여 원활한 생활숙박시설의 이용과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매월 총 경비와 수익등의 제정상태는 수분양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됨.
-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호실 및 부대시설에 제공되는 가구, 가전 및 기구(피트니스클럽의 운동기구) 대해서 개인소유로의 주장 및 반출이 절대 불가함을 인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호실 및 부대시설에 제공되는 가구, 가전 및 기구(피트니스클럽의 운동기구)외에 본 생활숙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 운영사와 협의하여 계약자가 구매하여야 함.
- 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인허가(신고)를 위해 수분양자는 숙박업(운영)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 본 분양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관계자(시행수탁자, 시행위탁사, 시공사 등)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공통유의사항]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호실별 전용면적, 계약면적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내 계획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 남측에 동서고가도로가 위치하여 조망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간섭 및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 · 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보행로, 도로 등은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착공 및 분양 이후 인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그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인도 전후 인접단지의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인접한 건물로 조망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간섭 및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 색채 (형태, 패턴, 재질 등), 조경 등은 설계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야간조명 효과, 차량 진출입, 단지내 보안등 시설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항공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동 외벽에 항공장애 등이 설치 운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계법령 따라 적용됩니다.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명칭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목적물인도시와 공급 시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인도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2개월에 해당하는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동의한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목적물인도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 각호실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관계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일정 및 목적물인도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시행 중에 샘플호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 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목적물인도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의 학교배정은 불가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옥탑에는 구내용 이동통신(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추후 전파조사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축설계관련 유의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 능력은 수정 메리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Ⅶ- 0.204g에 해당합니다.
-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개폐 및 환기창 포함)는 향후 풍동 시험 및 최적화 설계,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분할크기, 색상, 하드웨어, 디자인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타입의 단위실이라 하더라도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발코니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현관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 방화문, 실외기실의 철재도어의 디자인, 강판의 재질, 부속품의 형태 및 기능, 경첩의 개소 등은 추후 실시공 시 동등이상으로 변경/교체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방충망의 시공디테일은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 이동통신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옥상구조물 상부에는 도장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품절/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석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강마루, 타일, 세라믹타일(옵션항목)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샤시를 포함한 창호는 향후 입찰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마감재 기준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니 견본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 2개소(중앙대로변 대지경계선에서 약5m, 신천대로변 대지경계선에서 약3.6m)가 조성되며, 위치는 근린생활시설 서측과 남측에 위치합니다. 해당 공간은 24시간 개방된 보행공간으로 단지 소유이나 전용공간이 아니며,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드라이에어리어(DA)는 지상1층 동측면(부출입구)에 4개소, 차량출입램프 측면에 2개소, 지상1층 북 측면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의 실외기, 급/배기휀(식당, 화장실 포함), 제연휀 등은 외부 별도공간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저층부 실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한전인입 TR박스(한전개폐기)와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관할 기관과 협의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전,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및 식재 토심을 고려하여 식재 위치 및 설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목적물인도후 관리규약에 의거합니다.
- 건물 내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 구성에 따라 일부 실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대가 지상1층에 1개소(동측면)가 설치되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지상1층에 위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 고리 및 기타 철물이 설치됩니다.
- 지상4~28층의 북측면에는 실외기실이 위치하며, 중앙에는 린넨실, 보일러실 등이 위치하여 인접한 실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과 지상4층 사이에 PIT층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종 배기휀 및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 실에는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각층의 북측 공용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실외기는 해당층 전 호실이 함께 사용하는 멀티형 실외기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층 전 호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실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보일러는 공용부 보일러실에서 해당층 전 호실이 함께 사용하는 병렬제어식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인접실에는 소음, 진동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음식점 및 조리를 위한 주방시설을 포함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내 입점자가 냄새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하여 인근 호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야간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게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계획이 미확정이므로 추후 업종계획에 따른 실내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3층에 계획되어 각 시설 사용에 따라 저층부 실에 소음 및 진동, 악취가 발생하여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통합방재센터, MDF실 등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 · 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3층 전체에는 CJ푸드빌의 직영브랜드인 빕스가 입점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실내 · 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실 및 보행도로에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일부 실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발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은 지하1층과 29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해당층 실 및 인접 실의 경우 부대시설 이용자 이동동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합방재센터, 운영관리사무소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하1층과 지상29층 부대시설의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 등)의 운동장비는 제공되나 소모 집기 및 비품,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 중 일부는 관리 및 A/S업무를 위해 수분양자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부대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지상29층 부대시설은 추후 이용자의 편의성, 시설활용성, 시설운영 및 관리 등의 사유에 따른 상품개선 목적으로 경미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내부 가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 및 시설물을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운영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상의 부대시설은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상1층에 출입구가 2개소씩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는 동선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출입구입니다.
- 건물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총4대), 계단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동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건 운반 시 지상층 조경, 바닥 마감 및 건축물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은 불가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물건 운반은 가능합니다.
- 엘리베이터 모델은 분양광고시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주체가 확정 · 설치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무인택배함은 지상1층 인포메이션 옆(엘리베이터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추후 본 공사 시 설치여건에 따라 위치 및 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4층의 옥상부에 미관 개선을 위하여 조경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마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 이용과 관리인의 관리 동선확보가 불가능한 공간이고,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목적물인도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상4층 옥상 외부공간에 수분양자 이용이 가능한 조경 휴게공간과 공기안전매트가 조성되며, 이의 식재 및 시설물 등의 구성, 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각종 건축물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휀룸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공간의 구성이나 형태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일부 생활숙박시설 실(27타입, 33A-1타입, 33A-2타입, 34타입, 40타입, 42타입, 56타입)에 집광채광루버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향후 집광채광루버 시스템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광채광루버를 설치하는 실의 경우 작동을 위한 리모콘이 제공되며, 수동 및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됩니다. 옥상 태양광발전설비에 의한 눈부심이 일부 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의 거실에 전열교환 무덕트형 환기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거실에는 별도의 디퓨저가 제공되지 않으며, 타입별로 각 실에 설치되는 디퓨져의 수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무덕트형 환기시스템은 무선리모컨 동작입니다(1실 1개소 제공). 장비설치 및 덕트설치를 위하여 일부 커튼박스 길이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구집수정이 적용되어, 관련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 우려 구역 주위 배관에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40타입, 42타입과 인접하여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되며, 34타입과 인접하여 린넨실, 보일러실이 계획되며, 20A 및 20B타입과 인접하여 엘리베이터가 계획되며, 40타입과 인접하여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인접타입 호실에 악취 및 소음, 진동, 열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29층에 부대시설이 위치하여 28층에 위치하는 호실은 악취, 소음, 진동, 열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 및 마감재질은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호수에 따라 견본전시관과 설치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호실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 및 욕실배기는 직배기 방식이며, 각 실별 배기 성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별 병렬 제어식 가스보일러실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각 호실별 사용에 따른 요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실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에 객실관리시스템을 위한 설비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 단위실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제연설비인 제연덕트 급 · 배기구 설치로 상 · 하 호실간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조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빗물재활용을 위해 우수조가 설치되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방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유지차단장치(grease trap) 및 거름망을 의무설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각 호실별 별도의 급탕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차량출입구 1개소를 통해서 생활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6층까지 6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출입램프는 생활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생활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주차구획을 분리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1~6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관대기장소, 가압펌프실, 제연휀룸, 재활용보관소등이 위치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의 지하 1층에 재활용품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등이 위치하여 차량의 출입 및 이동이 있을 예정이며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이용 및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높이 2.7M초과(지하1층 기준)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계획 상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인접건물 및 인접호실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실은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호실, 주방의 향, 가구길이 및 위치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호수와 현관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신발장, 창고, 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공간 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당 사업장의 20A 타입은 지상4~8층 장애인 호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실내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내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 또는 거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단차 및 적용 위치는 사용성을 위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29층의 천정고는 2,400~2,500mm(우물천정고 2,600mm, 욕실 2,350mm) 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방/일반가구의 수납공간, 창호 크기 등은 층/타입별로 상이하며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의 실별 발코니 면적은 같은 타입이라도 호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단위실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및 마감,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단위실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바닥난방이 되지 않음에 따라 결로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실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주방 렌지후드 장 상부에 노출되는 배관을 가리기 위한 배관 커버가 설치됩니다. (커버 재질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6타입에 설치되는 주방 렌지후드 최상부 장은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로 이용되며,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콤비냉장/냉동고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배치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양변기가 위치한 실에는 바닥F.D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탁/건조기가 위치한 실 또는 가구장 상부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탁/건조기가 위치한 실 또는 가구장 상부에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전시관 및 카탈로그를 참고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실에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사전품질점검 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옵션항목)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바닥 마감 시공 시 거실 및 현관 디딤판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합부 디테일 및 나누기도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재의 특성 상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은 견본전시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욕실, 발코니, 아트월 등에 시공되는 타일의 나누기도 및 접합부 디테일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과 창호 접합부위의 디테일 및 마감은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타일줄눈 및 각 액세서리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손잡이 사양등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목도어,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이용자의 편의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목창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 방지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의 크기 및 생상, 높이, 하드웨어, 손잡이, 프레임의 제조사 및 형태, 디테일, 색상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되어 견본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시 슬라이딩 도어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힌지, 레일등의 하드웨어류는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욕실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호실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생활환경(대형수족관,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과다한 음식물조림 등)에 의한 과다습기 발생,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상대습도증가)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등 적정 상대습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북측 호실의 경우 방향에 따른 일사량 차이에 의한 결로 취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노출 카세트형 전열교환기는 견본전시관용으로, 본 공사 시 제품의 제조사, 사양, 모델,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냉난방용 에어컨은 본 공사와 무관한, 견본전시관 방문객을 위한 에어컨입니다. 본 공사 시 제조사, 모델명,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실외기는 각 층 공용부 발코니에 멀티형으로 설치되며, 인접 실에는 소음, 진동 등 불편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각층 공용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실외기는 해당층 전 호실이 함께 사용하는 멀티형 실외기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층 전 호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냉방을 위한 천정형 에어컨이 제공되며,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에어컨 방식이 적용됩니다. 용량은 평형에 따라 각 실별 부하량과 동시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된 기본 용량으로 제공됩니다. 멀티에어컨 방식은 인근 호실과 실외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접 호실의 실내기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실외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실내기 및 실외기의 수량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냉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요금은 각 호실별 사용전력량에 따라 분배되며, 냉방을 위한 공용요금(유지관리 및 기본운전을 위한 전기요금 등)이 발생합니다. 천정형 에어컨 및 실외기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생활숙박시설 내에 제공되는 호실의 발코니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 난방, 환기설비가 제공되지 않으며, 천정마감 여건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는 벽부형 또는 천정형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 전면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발코니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벽에는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실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세탁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창호면에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테리어 마감(커튼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집광채광루버의 설치 위치는 관계 인허가청 협의, 설치 여건 고려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되는 발코니의 경우 커튼박스 폭이 다른 위치보다 넓게 시공되며, 해당 호실 시스템 루버는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바닥은 비난방구간으로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식피난기 설치공간은 안전공간으로 이동경로 및 해당위치 주변은 피난에 방해되는 어떠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적물인도후 불법구조(발코니 확장, 내부구조변경 등)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SFC 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각 층 복도 끝 공용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해당 공간은 안전공간으로 이동경로 및 해당위치 주변은 피난에 방해되는 어떠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상4층 옥상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전개 공간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소방전용 비상콘센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소방 비상차 구획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견본전시관 관련]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CG(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부대시설 및 호실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촬영 및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 조성계획은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홈페이지 내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관련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각 실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홈페이지의 사이버 견본전시관 VR동영상은 견본전시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전시관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에 쓰인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 페브릭, 연출용 조명과 소품은 목적물인도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실의 형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실의 형태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외관 디자인에 따라 실시공시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니 견본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전시관 공용홀에서 실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또한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실 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로 만든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견본전시관은 27타입, 40타입, 56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서로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전시관은 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 및 기본 제공품목 등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관계자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전시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허가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한, 견본전시관 소화시설물로써, 실시공시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실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전시관 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합니다.
- 견본전시관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목적물인도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전시관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호실단자함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 ·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부대시설,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 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수 있습니다.
- 실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및 견본전시관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옵션항목)의 줄눈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전시관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전시관의 내부 인테리어 규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호실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전시관 세대 내에 설치된 무덕트형 전열교환기는 견본전시관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 모델,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적용할 경우]

- 유 · 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전시관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전시관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목적물인수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 · 무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선택형 타입의 경우 분양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타입으로 일괄 시공되며, 시공되는 타입은 그 시점에 선택현황 및 공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현관 중문을 포함한 AL 슬라이딩도어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AL슬라이딩도어는 단열, 기밀, 차음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합니다.
- 20A타입과 20B타입의 경우, 주방 평면옵션과 건조기는 추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 25타입과 27타입의 경우, 주방 평면옵션 미선택시 건조기는 추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 33A-1타입, 33A-2타입, 33B타입, 34타입의 경우, 건조기는 추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 20A타입과 20B타입/ 25타입과 27타입(평면옵션 미선택)/ 33A-1타입, 33A-2타입, 33B타입, 34타입의 경우 세탁기는 쿡탑 하부, 오븐은 가전소물장에 제공됩니다.
- 33A-1타입, 33A-2타입, 33B타입, 34타입의 경우, 별도 드레스룸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붙박이장 가구가 설치됩니다.
- 의류관리기 선택 시에는 붙박이장 가구/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가 수납공간 내 설치됩니다.
- 플러스옵션 종류 및 적용여부 등은 호실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플러스옵션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리회사

구분	감리회사명	비고
건축, 건설사업 감리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감리	주식회사 건일씨엠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 위탁자인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범위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본조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 및 위탁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 · 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공법상 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공급금액은 본문 기재 한국자산신탁(주) 명의의 예금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금액을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 해제 · 해지 시 공급금액 대금 반환, 소유권이전, 목적물인도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가 부담하고,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책임 처리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공급금액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의 공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위탁자 주식회사 원디벨롭먼트제일차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본 계약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그 체결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일체의 구두 혹은 서면의 합의, 확약, 양해, 본 계약 체결의 동기, 분양광고 등의 내용을 대체합니다.
- 본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운영 목적으로 분양하는 상품이므로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시공사가 책임준공한 "신탁건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그 외 "신탁건물"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수분양자의 임대 · 위탁운영, 운영수익 보장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계약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관리운영회사가 부담합니다.

코로나19관련 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견본전시관 입장이 제한됨

- 견본전시관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로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 시 / 기침 및 인후통 유증상 시 / 체온측정 및 기타 예방 불응 시

거주자 우선분양에 대한 사항 : 해당없음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 (등록번호 : 서울 070012 / 등록일 : 2007.12.12)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홈페이지 : http://sm-prugiocity.co.kr

견본전시관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678-2번지

분양문의 : 1600-0993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전시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UGIO CITY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1600-0993

생활숙박시설 408실 | 상업시설 45실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대우건설 위탁 (주)원디벨롭먼트제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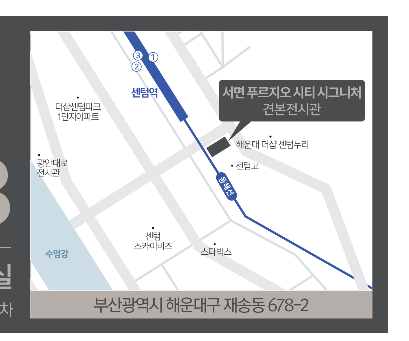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78-2